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 .	•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중 소 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0년간 유지되었음.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원가 급증으로 실질 성장없이 단순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출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과 관련한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3 (소기업 규모기준) 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대출액 규모 기준 상한 일부 상향 조정나.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세 강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관계부처 협의 완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미해당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 간주기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2. 1차 금속 제조업 3. 전기장비 제조업 1.800억원 이하 1.800억원 이하 1.8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 1차 급축 제소업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면구메츠에드
3. 선기상에 세소업	2. 1차 금속 제조업	C24	
5.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0년 비균액등 1,500억원 이하 6. 가구 제조업 C32 1,500억원 이하 7. 식료품 제조업 C10 20 1,500억원 이하 8. 화학문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C20 20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1,800억천 역약
5. 가국, 가항 및 신발 제소업	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러그레츠레드
6. 가구 제조업 7. 식료품 제조업 (C10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으 세외한다)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급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은 제외한다) 11.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3 11.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13. 그 밖의 원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배 및 소배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G)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성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란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6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26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31 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2 26. 운수 및 창고업 (C33 27. 정보통신업 (C34 28. 음료 제조업 (C35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36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임대업은 제외한다) (임대업은 제외한다) (임대업은 제외한다) (임대업은 제외한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 '
8. 화학문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은 제외한다)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급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은 세외한다) 11.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4. 건설업 15. 도매 및 소매업 16. 농업, 임업 및 어업 17. 광업 18. 담배 제조업 19. 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6. 운수 및 창고업 27. 정보통신업 27. 정보통신업 28. 음료 제조업 29. 인쇄 및 기록대체 복제업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의료, 정밀, 광화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수도, 하수 및 페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3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원한,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지원한,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지원, 관련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원, 관련 및 관매출액등 등 600억원 이하	6. 가구 제조업	C32	1,500억천 역약
은 제외한다) C20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으로 전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11.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4. 수도업 D 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페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 도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식료품 제조업	C10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급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점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4. 수도업 E36 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 36. 전문, 과학 및 기술		C20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은 제외한다)	=	C22	
11.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4. 수도업 E36 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C29	1,200억원 이하
1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6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4. 수도업 E36 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1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 36. 전문, 과학 및 기를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G 16. 농업, 입업 및 어업 A 17. 광업 B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6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4. 수도업 E36 E36			
15. 도매 및 소매업G16. 농업, 임업 및 어업A17. 광업B18. 담배 제조업C12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24. 수도업E36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26. 운수 및 창고업H27. 정보통신업J28. 음료 제조업C11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약 지원한다)E (E36 제외)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N (N76 제외)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M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16. 농업, 임업 및 어업	* *		
17. 광업			
18. 담배 제조업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24. 수도업E36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26. 운수 및 창고업H27. 정보통신업J28. 음료 제조업C11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N (N76 제외)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	C16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억원 이하 제조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24. 수도업E36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26. 운수 및 창고업H27. 정보통신업J28. 음료 제조업C11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N (N76 제외)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1,000억원 이하
24. 수도업E36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26. 운수 및 창고업H27. 정보통신업J28. 음료 제조업C11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N (N76 제외)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D	
26. 운수 및 창고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25.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음료 제조업		Н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E (E36 제외)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임대업은 제외한다)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F 600억원 이하	27. 정보통신업	J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8. 음료 제조업	C1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임대업은 제외한다) (임대업은 제외한다) T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T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Q T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T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C18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임대업은 제외한다) (임대업은 제외한다) T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T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Q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Q 전문,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전한대출액등 600억원 이하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2. 의료, 성밀, 광악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 도업은 제외한다)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8元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C34 R 2 2 2 2 2 2 2 2 2		C23	ద그메츠에드
33. 구도, 하구 및 페기물 서디, 원묘새생업 (구 도업은 제외한다)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 , , ,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N76 제외) (임대업은 제외한다)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E (E36 제외)	800억원 이야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N76 제외)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C34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1-1-2-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_	
	71 1 1 1 1 1 1 1 1		600억원 이하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 평균매출액등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	N76	400억전 역약
44. 교육 서비스업	Р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Н	평균매출액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 농업,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В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평균매출액등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건설업	C33 F	
51. 신설립	Г	평균매출액등
32.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 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허그레호세트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퍼그레츠세드
41. 교육 서비스업	Р	평균매출액등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76 79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 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연 락 처

(044) 204 - 7576